##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97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이성만・맹성규・박 정

양경숙・홍정민・안규백

송갑석 · 조승래 · 오영환

남인순 • 유동수 • 임종성

강득구 · 정청래 · 이광재

류호정 • 최종유 • 한정애

정일영 · 용혜인 · 이규민

허종식 · 김한정 · 양정숙

의원(2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 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그런데 최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승강기 버튼에 부착한 항균 필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승강기에 표시된 점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.

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

이를 개선·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(안 제5조제4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 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·보완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	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
책무) ① ~ ③ (생 략)	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
	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
	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
	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
	선・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
	를 강구하여야 한다.